**붙임 4** **장애인 · 임신부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**

## 1. 적용 시험 : 2026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시험

## 2. 제공 대상

가.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원서 제출자 중 해당시험 원서제출 마감일(2026. 8. 7.) 현재

ㅇ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

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

ㅇ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(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 장애인)

나.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, 임신부, 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

## 3. 신청 방법 및 절차

| | |
|---|---|
| **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** | ㅇ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 및 증빙서류를 참조하여, 본인 해당여부 / 장애유형(정도) / 편의제공 내용 / 증빙서류 등 확인 |
| ⇩ | |
| **온라인 원서제출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** | ㅇ 원서제출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항목 선택<br>(편의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선택 가능) |
| ⇩ | |
| **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(제출대상인 경우)** | ㅇ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제공에 필요한 **증빙서류**를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으로 **등기우편 또는 방문** 제출<br>▶ 제출기간 ➠ 2026. 8. 5.(수) ~ 8. 7.(금)<br>※ 우편제출 시 제출마감일(2026. 8. 7.)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<br><우편제출 주소><br>(우 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인사과(공무인력관리팀)<br>▶ 제출서류 및 의사진단서 발급 유의사항은 2~4쪽에서 확인 |
| ⇩ | |
| **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통보** | ㅇ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<br>ㅇ 제공여부 안내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인별 통보 |

# 4.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| 장애유형 및 정도 | | | 편의제공 내용 | 증빙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체 장애 | 상지 | 공 통 | •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<br>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br>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| - | |
| |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| • 시험시간 **1.5배** 연장<br>• 답안지 대필 | 없음 | 기존 1급~3급 |
| |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•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| 없음 | 기존 4급~6급 |
| | 하지 | 전 체 | •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<br>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| 없음 | 기존 1급~6급 |
| 뇌병변 장애 | 공 통 | | •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<br>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br>•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<br>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| - | |
|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| | • 시험시간 **1.5배** 연장<br>• 답안지 대필 | 없음 | 기존 1급~3급 |
|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장애인 | | • 시험시간 **1.5배** 연장<br>• 답안지 대필 | **의사진단서** | 기존 4급~6급 |
|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| •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| 없음 | 기존 4급~6급 |
| 시각 장애 | 공 통 | | •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<br>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| - | **교정시력 기준** |
|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| • 좋은 눈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 | • 시험시간 **1.7배** 연장<br>•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<br>• PDF파일 및 노트북 컴퓨터 제공 | 없음 | 기존 1급~2급 |
| | | 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| **의사진단서** | 기존 3급 2호 |
| | | • 좋은 눈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| • 시험시간 **1.5**배 연장 | 없음 | 기존 3급 1, 2호 |
|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• 시험시간 **1.7배** 연장<br>•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<br>• PDF파일 및 노트북 컴퓨터 제공 | **의사진단서** | 기존 4급 2호 |
| | | 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| • 시험시간 **1.5배** 연장 | 없음 | 기존 4급 2호 |
| | | •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 | • 시험시간 **1.5배** 연장 | 없음 | 기존 4급, 5급 1호 |
| | | •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 | • 시험시간 **1.5배** 연장 | 없음 | 기존 5급 2호 |
| | | •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 이고, 좋은 눈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 | • 시험시간 **1.5배** 연장 | **의사진단서** |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 |
| | | • 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 | •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 | 없음 | 기존 6급 |
| 청각 장애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| •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<br>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| 없음 | 기존 2급~6급 |
| 기타 | 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 | | • 장애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| **의사진단서** | **검토 후 안내** |
| | 임신부 | |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<br>• 높낮이 조절 책상<br>•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| **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** |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|
| | 과민성 대장·방광 증후군 | | •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<br>•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| **의사진단서** | |

* 확대문제지 ① 종이 인쇄형 : 118%(14포인트, A3 규격), 150%(18포인트, A2 규격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
② PDF 파일형 : PDF 문제 파일과 문제를 볼 수 있는 노트북컴퓨터 제공
* 확대답안지 : A3 규격 표기형(답항 번호선택)
* 축소문제지 : 82%(10point, A4 규격)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해 신청

## 5. 유의사항

가. 편의제공은 응시원서 제출 시 신청하고,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제출기한) 2026. 8. 5.(수) ~ 2026. 8. 7.(금)까지 (3일간)

나.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, 장애유형(정도), 편의제공 신청 가능 항목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기 바람

다. 의사진단서는「의료법」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** 또는 **상급종합병원**에서 **해당시험의 원서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**하게 인정합니다.

※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

라. 시험시간 연장은 **장애인 제한경쟁채용에서만** 제공합니다.

마.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.

바. 시험시행 일정상 별도의 **보완 기간이 없으므로**,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부산광역시 인사과 공무인력관리팀(051-888-119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6.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**가. 발급기관**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'종합병원' 또는 '상급종합병원'

▶의료기관 확인방법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(www.hira.or.kr) → 병원·약국 찾기

**나. 유효기간** :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▶진단서 발급일 : 2024. 8. 8. ~ 2026. 8. 7.

**다.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**

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
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

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항목 전부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## <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| 장애유형 및 정도 | | 발급내용 예시 ※ ①~③ 반드시 기재 |
|---|---|---|
| 시 각 장 애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| 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<br>- 시력/시야: 좋은 눈 0.07,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<br>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<br>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, 음성지원컴퓨터 |
|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br>- 시력/시야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<br>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답안지 작성이 어려움<br>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 |
| 뇌병변 장 애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br>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<br>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<br>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 |
| 기 타 | | ① 장애유형 및 정도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<br>- 증상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 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<br>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<br>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 ※ 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|

※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라 제공

### 라. 기타 참고 사항

- 진단서는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고, 발급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입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, 소견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임신부의 경우 의원·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도 인정하며, 의사소견서, 임신사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